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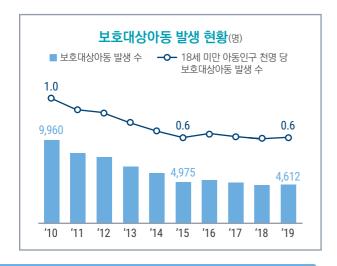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김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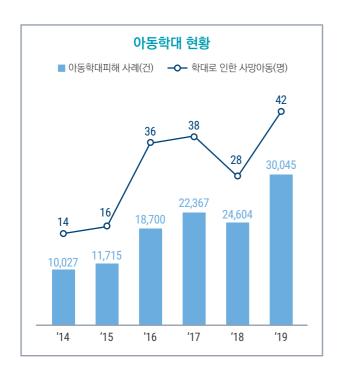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 감소로 보호대상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인구 천명 당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2015년 이후 약 0.6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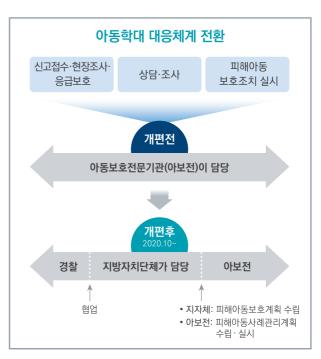
이에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지원 체계와 관련 재정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수행부처와 재원관리부처가 상이한 사업은 사업수행부처를 중심으로 재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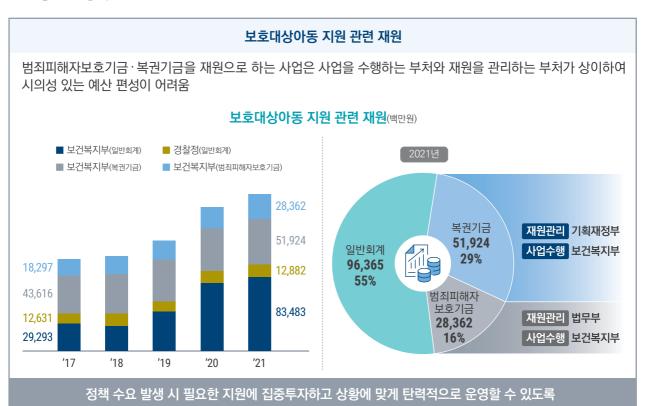






Ⅱ. 주요 쟁점 분석

1. 아동보호 정책 추진체계



관련 재원을 사업수행부처 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모색 필요

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전국 1개로 통일되어 심의 건 감소, 전담공무원 충원이 더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 안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 시설 및 인력 배치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기관 1개소당 연평균 보호대상 아동 발생 수



기관 상담원 1인당 연평균 아동학대 판단 건수



적정 수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그 종사자 수를 산출하여 적정 수준의 인프라 확충 필요

재학대 대응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 예정(2021.3.30.~)이나 지역별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차이가 있음

아동일시보호시설 ·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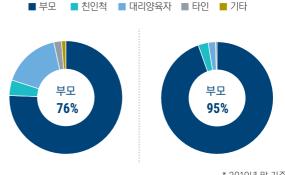
* 2019년 말 기준 * 즉각분리제도: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분리 보호

적정 수준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시설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존 양육시설 등 활용 고려 필요

부모에 의한 재학대 대응

부모에 의한 학대·재학대 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 아동학대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대행위자별 학대 사례 학대행위자별 재학대 사례



* 2019년 말 기준

학대행위자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제공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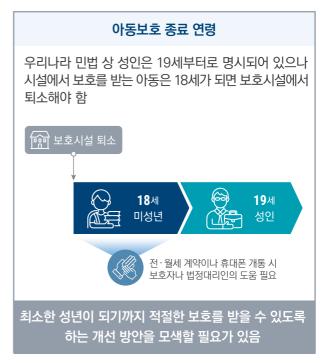
아동복지시설별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여부 및 자립지원 평가 여부 등이 상이하고, 퇴소아동의 자립률은 일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음

아동복지시설 유형별 자립전담요원 배치 규정 및 자립 관련 평가 유무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규정	시설 규모	10명 이상	8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 (명)	1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필요인원	1	1
시설 평가 시 자립관련 지표		0	0	Χ	0
현황 (2019년 말 기준)	자립전담요원(명)	231	0	11	1
	시설(개)	240	507	12	13
	보호종료 아동(명)	992	172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체계화하고,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 활성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2020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8곳에 설치되어 있음